

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(해제) 공고

제 호

반출금지 구역	면적 (ha)	피해상황			행위제한 사항	위반 시 벌칙
		장소	면적 (ha)	감염목 수 (본)		

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(해제)을 공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